

부속서 3.4
관세 철폐

제 1 절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1.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즉시”, “5년”, “7년”, “9년”, “10년” 그리고 “16년”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9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	발효일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8.1.1	19.1.1	20.1.1
16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TQ(1)”, “TQ(2)”, “TQ(3)”, “TQ(4)”, “TQ(5)”, “TQ(6)”, 그리고 “TQ(7)”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 관세할당은 부록2의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3.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DDA”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 협상한다.

4.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10년 S”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¹⁾

매년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 특혜 대우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0년 S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5.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E”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지 않는다.

제 2 절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1. 부록 1(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 “즉시”, “3년”, “5년”, “7년”, “10년” 그리고 “13년”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칠레의 한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3년	25%	50%	75%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	발효일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3년	0.0%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2. 부속서 1(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 “E”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칠레의 한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지 않는다.

부록 1

칠레의 관세철폐계획

제 1 절

시작 주석

이 부속서의 관세철폐계획은 다음 5개의 열을 포함한다.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호”: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사용된 호

나. “설명” : 호에 분류되는 제품의 설명

다. “유형” : 관세 철폐의 목적상 관련 상품이 분류되는 유형. 유형은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수입에 적용된다.

“즉시” : 협정의 발효 즉시 자유화

“3년” : 3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5년” : 5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7년” : 7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10년” : 10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13년” : 6년째부터 시작하여 13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E” :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다.

라. “비고” : 상품에 관련된 비고

부록 2 한국의 관세철폐계획

제 1 절

시작 주석

이 부속서의 관세철폐계획은 다음 4개의 열을 포함한다.

- 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 호”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사용된 호
- 나. “설명” : 호에 분류되는 제품의 설명
- 다. “유형” : 관세 철폐의 목적상 관련 상품이 분류되는 유형. 유형은 이 부속서 제1절에 규정된 수입에 적용된다.
 - “즉시” : 협정의 발효 즉시 자유화
 - “5년” : 5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 “7년” : 7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 “9년” : 9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 “10년” : 10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 “16년” : 7년째부터 시작하여 16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 “DDA” : 관세철폐계획은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 협상한다.
 - “TQ” : 관세할당 내에서의 자유화 (구체적 조건은 부속서 3.4 부록 2의 제2절 참조)
 - “10년 S” : 계절에 한정된 10년에 걸친 단계적인 자유화 (구체적 조건은 부속서 3.4 제1절제4항 참조)
 - “E” :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다.
- 라. “비고” : 상품에 관련된 비고

제 2 절

이 부속서 제1절제2항에 언급된 “TQ” 유형 제품의 관세할당

다음의 관세 양허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한국의 칠레산 제품 수입에 매년 적용된다.

- 가.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1)”으로 기재된 0201.20.00.00와 0202.20.00.00호로 분류된 제품 4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허용한다.
 - (1) 0201.20.00.00호 200톤, 그리고
 - (2) 0202.20.00.00호 200톤
- 나.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2)”로 기재된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그리고 1602.32.90.00호로 분류된 제품 총 20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 다.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3)”으로 기재된 0207.25.00.00, 0207.27.10.00, 0207.27.20.10, 0207.27.20.90, 1602.31.10.00, 그리고 1602.31.90.00호로 분류된 제품 총 6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 라.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4)”로 기재된 0404.10.10.10, 0404.10.21.20, 0404.10.21.30, 그리고 0404.90.00.00호로 분류된 제품 총 10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 마.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5)”로 기재된 0712.90.20.99호로 분류된 제품 1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 바.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6)”으로 기재된 0805.20.90.00호로 분류된 제품 10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 사. 한국은 이 부속서에 “TQ(7)”으로 기재된 0809.40.10.00호로 분류된 제품 280 메트릭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 아. 이 쿼타는 한국의 국내규칙(경매)에 따라 관리된다.